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범 약물운전죄 등에 대한 사물관할 변경〉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374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재범 약물운전죄 등에 대한 사물관할 변경(합의부→단독)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5. 7. 9.
3. 회 부 일 : 2025. 7.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 4. 1. 「도로교통법」 개정(2026. 4. 2. 시행 예정)으로 약물측정 불응죄가 신설되고 약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며, 약물운전 또는 약물측정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동 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었음.

그간 약물운전 금지 위반 등의 범죄는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이 대부분으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여 왔음.

그런데 이와 같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및 법정형 상향으로 관련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욱 복잡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합의부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여 사건 접수건수도 늘고 있으며, 약물측정불응죄도 신설되어 재범 사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의부의 업무 가중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아울러 약물운전죄, 약물측정불응죄,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등 다른 범죄는 모두 단독판사 관할임을 고려할 때 법적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이에 약물운전죄 및 약물측정불응죄 재범 범죄를 단독관할로 함으로써 사건의 보다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제한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Ⅲ. 검토의견

1. 재범 약물운전죄 등에 대한 사물관할 변경

-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단독판사 관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현행	개정안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 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 2. (생략)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 바. (생략)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생략) 4. ~ 6. (생략) ② (생략)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 <u>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u> ----- 아.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사물관할이란 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에 의한 제1심 관할의 분배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로 구분됨.

제1심의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제4항1)에 따라 원칙적으로 단독판사에 속하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제1호)’, ‘민사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제2호)’, ‘형사사건 중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특수상해·특수절도·존속폭행 등을 제외한 사건(제3호)’ 등은 합의부 관할임.

- 현행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 관할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한 특수상해·특수절도나 「병역법」 위반사건,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부정의료업자 처벌, 수표 위·변조, 음주 운전 재범 가중처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1)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④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2)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현행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단독관할 사건>

구분	규 정	내 용
가목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	특수상해, 특수존속상해, 특수절도, 특수절도의 상습범, 그 각 미수죄, 특수공갈과 그 미수죄, 장물죄의 상습범
나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	공동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감금, 공갈의 누범가중
다목	「병역법」 위반사건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체역 편입서류 허위작성·제출 등 사회복무요원 등 대리복무
라목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조의11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절도등, 장물취득·알선 누범가중처벌
마목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 처벌
바목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수표 위·변조
사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아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	중대산업재해, 시민재해 사업주등

○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의 개정(법률 제20864호, 2026. 4. 2. 시행 예정)으로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 호 및 제5 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으로 운전하지 못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운전을 하거나(이하 “약물 운전죄”라 함),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 측정을 거부(이하 “약물 측정불응죄”라 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약물운전죄 또는 약물측정불응죄를 저지른 경우 1년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³⁾이 신설됨에 따라,

약물운전죄 또는 약물측정불응죄 재범 사건의 사물관할이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의부 관할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사목 중의 하나로 규정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을 합의부로 할 것인지 단독판사로 할 것인지는 사건의 경중과 성질,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과 접수되는 사건의 추이 및 법원의 인적·물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3) 「도로교통법」(법률 제20864호)제148조의2(벌칙)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약물운전죄⁴⁾ 또는 약물측정거부죄⁵⁾의 사물관할은 단독판사 사건인 반면, 약물운전죄 또는 약물측정거부죄를 10년 이내 다시 범하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나,

약물운전죄 또는 약물측정거부죄의 경우 사실관계가 상대적으로 명료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간이시약 검사, 측정거부에 대한 현장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므로 재범인 약물운전죄 또는 약물측정거부죄 사건의 경우도 심리방식과 난이도에 있어서 사실상 차이가 없음.

또한, 유사한 범죄인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서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법 제32조제1항제3호 사목에서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4) 「도로교통법」(법률 제20864호)제148조의2(벌칙)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도로교통법」(법률 제20864호)제148조의2(벌칙)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원행정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합의부 사건의 급증이 예상되고, 약물운전죄 및 약물측정불응죄의 재범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전형적이라는 점, 약물운전죄의 경우 법 개정 전에도 단독판사가 처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입법 조치라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71